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2.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3.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4.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김연학
	담당부서 (과)	벤처투자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이은청		연락처	044-204-7711
	과장	이권재		이메일	kimyh6887@ 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 의무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8.23~2023.10.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 공급 필요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미적용 ○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 완화 ○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특수목적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td> <td>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목적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목적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펀드에 대해 종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M&A 촉진 및 중간회수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기설정	제35조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0.08.12~2023.08.11	3년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생략)</p> <p>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 신설></p> <p>③·④ (생략)</p> <p>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p> <p>2. (생략)</p> <p>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p> <p>가. (생략)</p> <p>나. <u>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u></p> <p>다. (생략)</p>	<p>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 ----- 벤처투자회사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u></p> <p>다. (현행과 같음)</p>

4. ~ 6. (생략)

<신설>

<신설>

4. ~ 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1조제4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법 제5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
5. 다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 개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관리 제도 운용 중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벤처기업 투자라는 본업에 충실하도록 투자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상장 법인에 대한 투자제한 비율 적용

< 벤처투자조합 개요 >

법적 근거	벤처투자법 제2조제11호, 제50조
업무집행조합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
유한책임조합원	49인 이하
최소 결성금액	20억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10억원)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개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 이상,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 (상장법인) 개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20%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투자 제한

- (추진 배경) 그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여력*은 늘었지만, 경기 하락,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 곤란

*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조원) : ('20) 4.2 → ('20) 6.9 → ('21) 9.5 → ('22) 10.7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악재가 가시화되고, 벤처기업의 기업가치도 여전히 높아 벤처캐피탈 업계는 올해는 벤처투자 적기가 아니라 판단"

- 또한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철회가 빈번하고, 시장은 기업가치 하락 추세에 따른 관망으로 M&A 거래가 줄어 성장 정체 우려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수(바이오/非바이오) : ('20) 25 (17/8) → ('21) 31 (9/22) → ('22) 28 (8/20)

* 국내 M&A(조원) : ('19) 141.9 → ('21) 134.1 → ('22) 78.7(전년 比 △41.4%)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배송 기업 중 유일한 흑자기업임에도 희망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 형성이 예상되자 상장 계획을 철회"

- 본회의 의결('23.5.25.)된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M&A 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를 도입하고 그 범위와 투자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M&A 펀드 : 중소·벤처기업의 M&A를 목적으로 상장 법인 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벤처투자조합
- * 세컨더리 펀드 : 타 벤처투자조합 또는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등을 다시 인수하는 벤처투자조합

○ (정부개입 필요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필요

-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규제를 폐지하여 타 벤처 투자조합 등의 지분 매입을 지원
-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대폭 허용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관련 대책 :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4.20)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1.4) 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 의무 완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미적용 • M&A 펀드의 상장법인 투자제한 비율 완화(20%→60%*) <p style="font-size: small;">* 20% 초과시 그 초과분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p>

< 벤처투자조합과 특수목적펀드 투자비율 비교 >

구분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펀드		
		M&A 펀드		
창업·벤처 기업	개별 조합	20% 이상	0%	0%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벤처투자조합	40% 이상	산정대상에서 제외	산정대상에서 제외
상장법인	개별 조합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벤처투자조합	20% 이하	산정대상에서 제외	산정대상에서 제외

* 20% 초과시 그 초과분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구체화, 투자비율 명확화를 통해 M&A,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비율 위반 시 처분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규제대안에 대한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 간담회 (협회, 벤처투자회사, 창업투자 유한책임회사등)	벤처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7.18)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특수목적펀드에 대해 종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M&A 촉진 및 중간회수 활성화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M&A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 투자규제 완화를 통해 M&A 촉진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수단) 벤처투자조합이 창업·벤처기업 투자라는 본업에 충실하도록 창업·벤처기업 및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도입되었으나,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투자비율 조정 필요
- 특수목적펀드의 범위는 종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요건을 상향입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 확보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생략)

② 영 제35조제5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2.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의 인수

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라.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매수

마. 다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타당성) 특수목적펀드에 대해 여타 벤처투자조합과 상이한 별도의 투자비율(창업·벤처기업 투자, 상장 법인 투자)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나,
- 이를 통해 M&A 촉진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적 규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완화 또는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이므로 일괄하여 재검토 예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정내용은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율,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피규제자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특수목적펀드의 투자비율은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의 산정기준을 활용하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23.7.18)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특수목적펀드의 투자비율을 완화함으로써 M&A 촉진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8.23~2023.10.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 ○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금융기관 자금차입이 불가하여 투자기업 중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후속투자 자원 마련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60%) ○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60%) ○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td> <td>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유한(책임)회사(44개사, '22년)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통해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후속투자 자원 확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p> <p>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출자금 총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시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p> <p>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p> <p>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p> <p>⑤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를 말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내여야 한다.</p> <p>⑦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 및 재산의 운용을 하여야 한다.</p> <p>1. 단일 법인 또는 단일 사업 등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목적으로</p>

	<p><u>하여야 한다.</u></p> <p>2. <u>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려는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3. <u>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액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u></p> <p>4. <u>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63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u></p> <p>5. <u>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운영 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때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u></p>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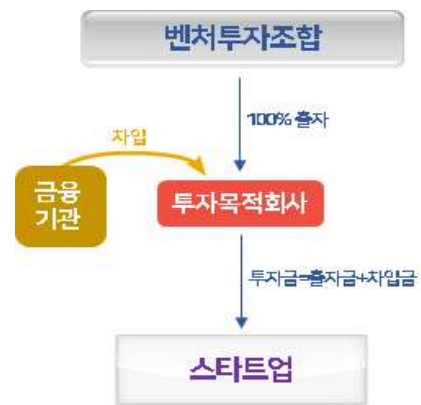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 개요)** 투자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허용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가능

- **(추진 배경)**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23.5.25)

-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신설, 투자 의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아울러 차입 한도, 재산 운용 세부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금융기관 자금차입이 불가*하여 투자기업 중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후속투자 자원 마련이 어려움

* 벤처투자법 제52조제2항 : 벤처투자조합의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 금지

-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 소관)는 조합이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후속투자 자원 마련에 필요한 자금차입이 가능
- 벤처투자조합도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후속투자 자원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 운용 기준 마련 필요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관련 대책 :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4.20)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1.4)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1.1.13)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비율(60%) •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60%) •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 투자목적회사 설립·운용을 통한 대규모 후속투자 활성화	•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관리를 위한 행정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규제대안에 대한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 간담회 (협회, 벤처투자회사, 창업투자 유한책임회사 등)	벤처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7.18)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통해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후속투자 자원 확대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대형 후속 투자 재원 확보
- (수단) 투자목적회사의 자금이 창업·벤처기업 공급되고,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입 및 재산운용 기준 마련 필요
 - (투자비율) 차입금을 포함한 투자목적회사 재산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되도록 벤처투자조합과는 별도로 투자의무비율 60% 부여
 - * 여타 재산은 세무·법률·회계 등 투자 제반 비용에 사용
 - (차입한도) 투자목적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모집합투자 기구처럼 자기자본의 400% 이상의 차입 제한
 - * (입법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는 자기자본의 400%를 초과하는 차입 불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249조의13)
 - (운용·관리)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일기업·사업(1회 투자)으로 한정, 설립·차입시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출자 전 조합원 특별 결의 의무 부여
 - (지분 참여) 책임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M&A 펀드에 한해 피인수·합병법인 임원·대주주 등의 SPC 지분 참여 허용*(지분율 40% 이내)
 - * 일반 벤처펀드는 투자목적회사에 단독으로 100% 지분 출자, M&A 펀드는 60% 이상 출자
- (타당성)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차입 및 재산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벤처투자조합이 업무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나,
 - 이를 통해 투자목적회사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규제 목적이 달성됨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구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	
근거법률	벤처투자법 제51조의2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설립요건	회사형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목적	단일 법인·사업 (1회)	특정 법인·자산 투자
	복층구조	불가	허용
	주주·사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벤처투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벤처투자조합 (100%) ○ M&A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벤처투자조합 (60% 이상) - 피인수·합병기업 임원·대주주 및 투자목적회사에 신용공여한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50% 이상) ○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대주주 ○ 투자목적회사에 신용공여한 금융기관 ○ 전략적 투자자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공동 경영 참여자)
	주주·사원수	49인 이내	100인 이내
	직원채용	채용하지 않음	
	영업소	본점 외에 설치하지 않음	
관리	조합 등록·변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청산 ○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 투자목적회사의 사원·주주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청산 - ○ 투자목적회사의 사원·주주 변동
	업무 운영상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 차입 현황 및 차입비중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 차입 현황 및 차입비중 등 점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정내용은 벤처투자조합에 제한되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차입 및 재산운용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대형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한 벤처투자조합에게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23.7.18)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차입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목적회사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8.23~2023.10.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의결(' 23.5.25.)된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투자조건부 용자 제도의 도입근거 신설 ○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 실적 관리를 위한 용자기관의 신고 기준 구체화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투자조건부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 용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건부 용자계약 제공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용자기관</td> <td>은행(16개사, '22년) 기금관리기관 (44개,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용자기관	은행(16개사, '22년) 기금관리기관 (44개,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용자기관	은행(16개사, '22년) 기금관리기관 (44개,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이 저금리 용자를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을 통해 후속 투자 가능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4조의2(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① <u>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② <u>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를 말한다.</u></p> <p>③ <u>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u></p> <p>④ <u>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한 용자기관은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은 법인, 계약 체결일, 만기일, 용자금액, 이율 등 용자조건</u> 2. <u>용자기관의 배정주식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용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u> 3. <u>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p>⑤ <u>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u> 2. <u>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u> 3. <u>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u> 4. <u>개인투자조합</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개요) 투자조건부 용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 까지 저금리 용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 할 수 있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 용자기관은 후속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용자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지분 인수권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

*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만큼 저금리 용자가 가능하며, 용자금 상환이 벤처투자자와 상호 연동되도록 VC와 용자기관간 심사 정보를 교환

- 창업·벤처기업은 저금리 용자를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을 통해 후속 투자 가능성을 제고

○ (추진배경) 본회의 의결('23.5.25.)된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투자 조건부 용자 제도의 도입근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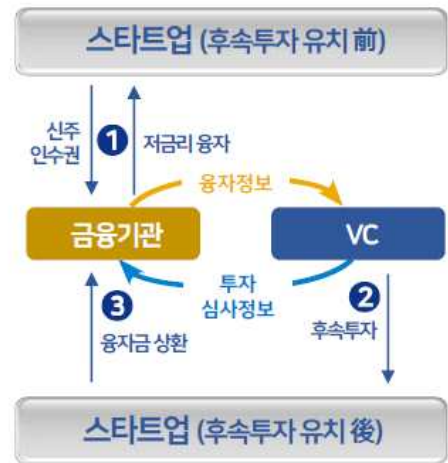
- 시행령에 투자조건부 용자기관의 범위, 용자기관과 심사 정보를 교환하는 투자기관의 범위, 용자실적에 대한 신고사항 등을 위임

- 중기부는 정책용자를 통해 투자조건부 용자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타 공적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 예정

○ (정부개입 필요성)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 실적 관리를 위한 용자기관의 신고 기준 구체화 필요

- (용자기관) 법에서 명시한 은행 이외에 기금*관리기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용자가 주업무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추가

* 중진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벤처투자가 허용된 44개 기금(벤처투자법 제71조)



- (창업·벤처기업) 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 상장 법인
- (투자기관) 용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 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 * (법)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행령)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집합투자업자, 개인투자조합 추가
- (신고의무) 만기·이자 등 용자 조건, 신주 배정·인수 실적에 대한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 의무 부여
 -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 관련 대책 :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4.20)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1.4) 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투자조건부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 용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 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 저금리 용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 용자기관의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신고의무에 따른 행정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규제대안에 대한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 간담회 (협회, 은행, 벤처투자회사, 창업투자 유한책임회사등)	벤처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7.18)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창업·벤처기업이 저금리 용자를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을 통해 후속 투자 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창업·벤처기업이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대신 저금리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조건부 용자의 참여주체 및 신고의무 명시
- (수단)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 실적 관리를 위한 용자기관의 신고 기준 구체화
- (타당성) 만기·이자 등 용자 조건, 신주 배정·인수 실적에 대한 용자기관의 분기별 신고 의무 부담이 따르나,
 - 투자조건부 용자로 인한 벤처투자(신주인수권 배정) 실적자료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정책 수립·추진이라는 공익적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함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현행 벤처투자 실적을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벤처투자법 제73조) >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주체 및 신고사항은 재검토를 통해 규제가 폐지·완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몰 설정이 부적절
- (경제규제여부 검토 등) 동 규제는 부수적 절차의 신설·변경, 행정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주체(용자기관, 투자기관 등)의 본원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일몰제로 관리할 실익이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은 용자기관이 후속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용자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지분인수권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은 저금리 용자를 받을 수 있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23.7.18)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의 참여주체와 신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기준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의2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8.23~2023.10.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의결(' 23.5.25.)된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신설, 공시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에 따라 출자자를 보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책임 있게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기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개인투자조합</td> <td>개인투자조합 (3,227개, '22)</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3,227개, '22)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3,227개, '22)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를 통해 출자자 보호 및 조합 운용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적정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세부기준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 개요) 투자주체 및 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운용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출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력을 높이고자 공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위반횟수와 허위공시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 (시행령 별표2)

< 투자주체·조합별 공시시기 및 내용 >

구분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공시방법	전자공시 (diaa.kised.or.kr)	전자공시 (diva.kvca.or.kr)	전자공시 (diva.kvca.or.kr)
정기공시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조직·인력 ▸ (법) 재무·손익 ▸ (법) 조합운영성과 ▸ (법) 초기창업기업 투자·보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조직·인력 ▸ (법) 재무·손익 ▸ (법) 조합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결산서 ▸ (고시) 조직·인력 ▸ (고시) 재무·손익 ▸ (고시) 운영성과
수시공시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 (법) 경영개선조치요구·업무정지명령·시정명령·경고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재처분 사항

<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공시			허위공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 (추진 배경) 본회의 의결('23.5.25.)된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그간 공시의무가 미적용되던 개인투자조합에 공시의무 신설*, 공시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공시의무 대상 : (기존)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개정) 기존 + 일부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 신설 조문 (법 제21조의2) >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울러,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명시(법 제80조 제1항 제3호)

* 개인투자조합 공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타 투자주체 및 조합과 동일 기준 적용

<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제80조제1항제3호) >

<p>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정부개입 필요성)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에 따라 출자자를 보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책임 있게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개인투자조합 결성 추이 (단위 : 억원, 개)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결성금액	912	2,035	2,832	3,324	6,278
결성조합 수	174	302	336	485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5.2	6.7	8.4	6.8	6.9

- 다만, 공시에 수반되는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개인투자조합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기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대상 기준을 공시 의무가 기적용중인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20억원)으로 설정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과 공시 대상의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 부여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 부담

<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비교 >

구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법적근거	벤처투자법 제2조제8호, 제12조	벤처투자법 제2조제11호, 제50조
정의	개인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최소 결성금액	1억원	20억원
투자의무	창업·벤처기업에 50% 투자	창업·벤처기업에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조합의 결성금액의 40% 투자 (개별 조합은 20% 이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규제대안에 대한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 간담회 (협회, 벤처투자회사, 창업투자 유한책임회사등)	벤처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7.18)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를 통해 출자자 보호 및 조합 운용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출자자 보호
- (수단)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부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설정
- (타당성) 결산서 등의 공시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있는 조합 운용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나,
 - 이를 통해 조합의 출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조합 운용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규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 대상기준은 재검토를 통해 규제가 폐지·완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몰 설정이 부적절 (현행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에 대해서도 일몰 적용 제외)
- (경제규제여부 검토 등) 동 규제는 부수적 절차의 신설·변경, 행정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주체(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원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일몰제로 관리할 실익이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농식품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등 주요 투자주체에 대해 공시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음

구분	법적 근거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제33조	분기별 영업보고서,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조직인력, 재무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 등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2조	조합 규약, 결산서 등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정내용은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종전 공시의무가 적용중인 벤처투자조합의 최소결성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종전에 공시의무가 기적용되던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23.7.18)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출자자 보호와 조합 운용의 투명성·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